

의안검토보고

의안 번호	제 3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7. 15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시·군·구에서 위임받아 시행하여 왔으나, 병역법 개정(법률 제6547호, 2001. 12. 29)에 의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관리국 소관중 “병사에 관한 사항”을 병사위임사무 폐지로 인하여 삭제함. (안제5조 제2항 제27호)

2.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병역법 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위임) 규정이 2001. 12. 29. 개정, 2002. 7. 1. 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·군·구에서 처리하던 병무업무가 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하게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- 참고로 2002. 7. 1이전 병사업무수행 공무원은 6급 1명을 포함 5명이고, 공익요원은 13명이며,
- 국고보조금은 96,444천원이었으며, 7. 1이후 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 완료되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병사위임사무폐지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사항

⑥ 병역법 제78조

제78조 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제34조의3제5항·제70조제2항·제3항·제5항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2. 5, 1999. 12. 28>

②이 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12. 28, 2001. 12. 29>

③삭제 <2001. 12. 29>

④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(재외공관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